2023년 상반기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 현황

구분	순번	자 문 내 용	비고
	1	사립학교법 개정 관련 법률 자문 요청	
	2	인천시교육청 체육복 지원 업무와 관련한 법률 자문 요청	
	3	교장공모제 운영	
	4	상위법 위배 소지 여부	
	5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 검토	
	6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문해교육시설(비정규학교)에 대한 자본적 교구비 지원 가능 여부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7	「사립학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개방이사 자격요건 관련	
	8	사립학교법 개정 관련 법률 자문	
	9	교육환경평가 실시 대상 여부 관련 자문	
	10	교장공모제 운영 관련 질의	
	11	성희롱 2차 피해 및 비밀유지 위반	
	12	민원업무 처리 관련 법률 자문	
	13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진행 및 용어 검토 요청	
	14	공동관사 신축 진입도로 조성 주체	

구분	순번	자 문 내 용	비고
	15	○○○초등학교 장기 대부자 상대 명도소송의 실익여부	
	16	검정고시 응시자격 제한 관련 법률 자문	
	17	기술검증 방법의 타당성 및 용어 검토 요청	
	18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간의 전직 관련 법률 자문	
	19	행정권한의 위임 범위 해석 관련	
	20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법률 자문	
	21	개인과외교습자 보조강사 채용 사무처리 관련	
	22	사립유치원 설립자 변경인가 관련 법률 자문	
	23	마을방과후학교 사무처리 관련 법률 자문	
	24	공사계약대금 미지급 관련	
	25	공사준공대금 변제공탁 관련	
	26	학원 허위과대광고 사무처리와 관련한 법률 자문	
	27	사립유치원 인가업무 사무처리 관련	
	28	공사계약(채권압류) 사무처리	
	29	아동학대특례법 및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한 법률 자문	

구분	순번	자 문 내 용	비고
	30	아동학대특례법 및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한 법률 자문	
	31	행정소송 상고 여부 자문 요청	
	32	학교 정수기 수질검사 용역 지원 사업 관련	
	33	사립유치원 설립자변경	
	34	학원법 및 평생교육법의 시설 중복 관련	
	35	정보공개법 및 학원법 법률해석 및 공개 가능 여부 자문	
	36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관련	
	37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한 임용전 경력의 인정율에 관한 질의	
	38	공개입찰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민원사항 회신서 검토	
	39	2단계 입찰 조달청 의뢰 계약 사무처리와 관련한 법률 자문	
	40	○○○○중학교 협약서 이행 관련	
	41	착오송금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가능 여부	
	42	계약제교원 임금 반환 청구 관련	
	43	협력교사 채용 불합격 처분 취소 행정심판 건	
	44	학교급식식재료(공산품) 낙찰자 선정 관련	

구분	순번	자 문 내 용	비고
	45	학교 계약사무처리와 관련한 법률 자문	
	46	학교 내의 흡연실 설치가 적법한지에 대해 법령문(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 해석	
총계		46건	

※ 동일한 자문내용에 대해 2명 이상의 고문변호사에게 자문받은 경우는 1건으로 간주

법 률 자 문 결 과 보 고 서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1	사립학교법 개정 관련 법률 자문	□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사관에서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서 민사소송의 판결내용 중 주문이 아닌 '이유'에 기재된 부분을 근거로 징계할 때 처분의 적법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여부	
			□ 교육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위반 등 징계사유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민사판결 이유에 나타난 사실관계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관련 당사자가 부정행위로 위자료 판결을 받은 것은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서 위법성의 인식이 높다는 의미이므로, 민사판결 이유에 기재된 부분을 근거로 징계처분이 가능
			□ 형사사건이든 민사사건이든 관련자의 비위사실을 인정하는데 참고하는 용도로 사용, 판결이유의 개재된 내용을 근거로 자체적으로 비위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위법한 것은 아니나, 관련자가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다툴 것이 예상
2	인천시교육청 체육복 지원 업무와 관련한 법률 자문	□ 학교에서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으로 체육복 구매계약을 체결시, 2023년에 한하여 직접생산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고,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구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1천만 원'이상의 수의계약 방식으로 중소기업자들에게 체육복을 구매할 경우, 위 판로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 이 사안의 경우, 귀청의 의견 중 '을설'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은 위 판로지원법 제9조 제6항 단서의 '특별한 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어 보임. 각학교는 2023년에 한하여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체육복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보이는데 그 이유는 ① '직접생산 확인'을 받지 않은 중소기업자와 체결한 수의계약의효력이 없다는 규정이 없는 점, ② 이 사안의 경우교육청의 체육복 지원 조례가 2022. 11. 7. 통과되어그 시행이 급박하게 이루어진 점, ③ 판로지원법 제9조6항에 따라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라는 요청이 있더라도, 그 단서 조항의 '계약 제품(체육복)의 특성,계약의 이행 정도 및 구매일정(개학 전 1달 정도의짧은 기간) 등 특별한 사유'를 주장하여 이미 체결된수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임
			□ 판로지원법 제9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3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①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에 ①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판로지원법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아닌 수의 계약에 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직접생산 여부를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확인할 필요가 없음. 이러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면 체육복비 지원 제도의 도입 초기인 2023년에 한하여 각 학교가 체육복 구매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또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하여는 판로지원법에 따른 수의계약이 가능하여 직접생산 확인이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교장공모제 운영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의	□ 공모교장이 당해 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건 충족 여부	□ 공모교장이 그 직에서 해제되면 공모교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직위로 복귀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강등"의 효과가 발생함. 따라서 해석 및 적용은 엄격해야 함.
			□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공모교장의 직을 해제할 경우, 이는 '강등'과 유사한 사실상의 징계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4	상위법 위배 소지 여부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의해 설치하여야 하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것이나,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 '인천광역시교육청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그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이 사건 조례 규정은 이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이 사건 조례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4항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두 위원회의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하다고 하여 '인천 광역시교육재정심의원회'로 하여금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사료됨.
			□ 두 위원회 간 기능은 유사한 면이 있어 보이나, 그 구성에서 유사성을 확인하기 쉽지 않음. 현재로서는 일반법의 근거규정에만 근거하여 기능적 유사성만 확인되는 양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는 조례 규정은 양 위원회를 개별 법령에 따라 구성하고 설치, 운영한 취지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임.
5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 검토	□ 인천교육청과 ○○○○○○공사 간 독서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내용에 대한 법률사항 검토	□ 촬영 관련 학생, 학부모, 교사 동의 및 초상권 획득 필요(다만 동의 범위를 벗어나는 초상권 침해로서 침해받은 당사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연번	구 등	d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6	개인이 운 민간문해교 (비정규학 대한 자본적 지원 가능	육시설 교)에 교 구 비	교재비 및 교구비'지원 조항이 있으나 교구에 대한 상세 기준은 없는 상태이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경비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음. 이러한 경우, 민간문해교육시설에 대한	예산편성 지침까지 고려하여 해석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법령상 자본적 교구비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보조금 지원 제한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통한 교육청의 재량적 판단이 가능한 사안임.
		자본적 교구(냉난방기, 컴퓨터 등)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 교육감은 민간문해교육시설에 대하여도 적어도 그것이 교구에 해당하는 이상, 경상적인지 자본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법령상 지원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문해교육시설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시 발생할 수 있는 물품관리 상 문제를 감안하여 지원할 것인지 여부는 교육감의 재량에 속함
				□ 「평생교육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제2호 따라 문해교육 교재비 및 교구비를 지원할 수 있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문해교육 교재비 및 교구비"에 냉난방기, 컴퓨터 등 비품을 의미하는 자본적 교구비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임. 하지만 법률문제는 구체적인 사안 및 관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관에서 판단해야 함.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 「평생교육법」 및 동 시행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교구비 등 재정적 지원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교구비의 구체적인 내용과범위 등 세부적인 기준은 없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자본적 경비를 민간경상보조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자본적 교구비는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해석해야할 것임.
			□ 「평생교육법」 및 동 시행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교구비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하여 자본적 교구의 경우는 세출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해석됨. 따라서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 시설에 자본적 교구비를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관련 법령 해석상 어렵다고 보임.
			□ 「평생교육법」에는 교구비 지원시 교구에 대한 상세한 기준이 없으나,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민간경상보조의 경우 '자본적 경비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문해 교육시설(비정규학교 등)에 지방보조금 지원 시 자본적 교구비 지원이 가능하지 않다고 해석함이 보다 타당하다고 사료됨.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7	「사립학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개방이사 자격요건 관련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 (개방이사는 제외한다)이었던 사람"중 '개방이사는 제외한다'의 해석에「사립학교법」제21조에 따라 선임된 '감사'를 포함해서 적용 가능 여부 - 갑설: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통해 선임된 감사의	개방이사만 제외된다는 것이지, 이를 유추 해석 및 확대해석하여 감사는 제외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음. 즉,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통해 선임된 감사는 제외 되는 규정이 없어 개방이사가 될 수 없음.	
		경우 개방이사 자격요건 제한에 해당되어 취임 승인 불가 - 을설: 추천감사의 경우 개방이사 자격요건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 취임 승인 가능	취임 승인 불가 - 을설: 추천감사의 경우 개방이사 자격요건 제한에	이사'는 제외된다고 하여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 중
			□ (갑설) 이사(개방이사)의 개념에 감사가 포함된다는 규정은 없고, 이사(개방이사)와 감사의 기능은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르므로 개방이사와 감사를 동일시 할 수 없어, '개방이사는 제외한다'의 해석에 「사립학교법」 제21조에 따라 선임된 감사를 포함해서 해석할 수 없음. 취임 승인 불가.	
8	사립학교법 개정 관련 법률 자문	□「사립학교법」에 사무직원의 의원면직 제한, 징계사유, 징계부가금 등 징계관련 조항을「지방공무원법」에 준하여 신설할 경우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는지 여부	있음에도, 그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않은 '의원면직 제한'만 그 필요성에 따라 규정하는 것이 사립학교의 자율성 보장과 공공성 확보의 균형, 사무직원과 교원과의 신분상 보장 차이, 사무직원의 비위행위 예방 목적을 종합할 때,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의원면직 제한 규정만 신설하는 것이 타당함.
			□ 사무직원의 의원면직 제한 규정만 신설하는 경우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음.
			□ 이미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 관련 조항 일체를 법률에 직접 규율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 관련 조항 전체가 아닌 사무직원의 의원면직 제한 규정만 신설하는 것이 헌법 원칙 및 사립학교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
			□ 공공성과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사립학교의 자주성 제한 등을 비교하시어 공공성의 필요가 더 큰 경우라고 판단되신다면 징계 관련 규정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의 자주성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음.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9	교육환경평가 실시 기존에 학교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학교 [대상 여부 관련 자문 용지내 학교급이 다른 학교가 새로이 설립될 경우 교육 환경평가 실시 대상인지 여부	□ 기존에 설립된 학교 용지 내에 학교급이 다른 학교를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 기존에 설립된 학교에 관한 교육환경평가 실시 여부와 무관하게, 새롭게 설립될 학교에 관하여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됨.	
			□ 학교급이 다른 유치원과 온라인학교는 기존 초등학교와 그 종류를 달리하는 만큼, 새로 설립될 경우 대상 학생들의 교육환경 보호 관련 평가 기준이 새로이 달라질 여지가 있는 만큼, 유치원 및 온라인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역시 교육환경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평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기존 학교 용지 내에 새롭게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설립되는 학교를 다니게 될 학생 숫자와 기존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 숫자를 합하여 기존 학교의 용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용지가 부족하다면 어떻게 공간을 마련할 것인지 등 최대한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방법이 적당한지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동일한 학교용지 내에서 다른 학교를 신설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존 학교가 교육환경평가를 받지 않았다면, 신설학교에 대하여는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할 것으로 사료 됨.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10	교장공모제 관련 질의	운영	□ 공모교장의 직을 해제할 수 있는 '당해 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의	공모 교장이 당해 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로 해섬함이 보다 타당하다고 사료됨.
			조건 충족 여부	'갑설'은 물론 '을설' 역시 타당하지 않으며, 추후 사건의 진행사항을 보고 판단해야 함.
				해당 사안은 공모교장의 직을 해제할 수 있는 '당해 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징계와 별개의 인사조치로서의 직의 해제 가부는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
				법령상의 근거 없이 임의로 징계처분을 행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부당하다고 사료됨.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에 해당됨.
11	성희롱 2차 및 비밀유지		일부의 사진(이하 '사진')을 보내고, 피해자에게 보여주라고 한 행위가 - 2차 피해 해당 여부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해당 여부	사진은 심의 '결과'가 기재되어 있는 통지서의 일부를 촬영한 것이고, 그 구체적 이유 등을 확인할 수는 없으며, 피해자의 신상정보나 권리구제를 방해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어떠한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2차 피해'로 판단하기 어려움. 사진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대상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도 인정하기 어려움.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 행위자는 제3자에게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에 성 관련 사안이 있었음을 알렸다고 볼 수 있고, '비밀유지서약서'에 따른 의무 위반 여지 있음.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징계의 가중) 제2항에 따라 가중 처분 가능함.
12	민원업무 처리 관련 법률 자문	□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의거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된 CCTV에서 수집된 개인정보 등 영상 정보를「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2호	하는 것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CCTV
		및 제18조 제2항 제2호를 근거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특정감사 및 복무감사 시행을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나열하고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제2호는 감사 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대상기관 또는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시설 안전 등의 목적으로 설치하여 수집한 CCTV 영상정보를 사안의 자체감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13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진행 및 용어 검토 요청		
14	공동관사 신축 진입도로 조성 주체		□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교육감이 진입로를 확보하는 것이 타당함.
15	○○○초등학교 장기 대부자 상대 명도소송의 실익여부	소송을 할 경우 소송 실익이 있는지와 실익이	 □ 폐교활용 계획에 따른 명도 필요성도 있으며, 승소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명도소송의 실익이 있음. □ '교육청의 자체활용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미리 받아 놓을 것. □ 대부계약의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공문 또는 내용증명으로 발송
16		□ 검정고시 공고일 이후에 정원외관리 처리된 중학생의	□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함이 타당함
	제한 관련 법률 자문 검정고시 응시	검정고시 응시자격 제한이 적법한지 여부	□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함이 타당함
			□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함이 타당함
			□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함이 타당함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17		□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기술검증방법의 타당성 여부 □ '소리펜 및 관련 코드 패턴 기술을 보유해야 함'에서 보유는 관련 코드를 구매하여 보유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18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간의 전직 관련 법률 자문		그렇다면 위 부칙 제2조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연구사 (장학사) → 교원으로 전직을 함에는 제한이 없다고 보임. □ A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6번에 해당하는 전직이 어려울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 각 단계별 전직 횟수 제한을 두게 된 도입 취지, 교육 전문직에서의 승진임용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보면, 각 단계별로 최초 전직임용된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 직위로의 전직 제한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본 사안의 해석론으로는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이 사안 조항에 대하여는 삭제안이 행정예고되어 있으므로, 전직 제한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됨.
			□ 규정에서 '이 규정 시행이후 교육전문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교육공무원'의 의미는 2011. 11. 23. 이후 새롭게 '교육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를 의미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2018. 3. 1.자 연구관(장학관) 직속기관 부장이상으로 임용된 경우 위 부칙에서 의미하는 신규임용에 해당하여, 2020. 3. 1.자 교장으로의 전직이 전직 1회에 해당하고 연구관(장학관)으로 전직한 후에는 제15조 제3항에 따라 전직이 제한되며, 다만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교육전문직원 또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및 시·도교육청의 과장, 교육지원청 과장, 직속기관 부장 이상 포함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직이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19	행정권한의 위임 범위 해석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감의 권한 사무를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조례로 교육장에게 위임한 바,「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 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제5조 제5호 다목의 '법 제28조의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의 위임 범위 해석을 '법 제28조제1항 중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하는 사무만 위임한다'로 제한 해석 여부 - 갑설:「사립학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8조의 내용 전부가 교육장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중학교 이하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의 관리 및 보호 등의 업무는 교육장에게 위임된 사무(교육지원청 업무)라는 의견 - 을설: 조례에'법 제28조의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것임. 추후 조례의 문언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다수 대법원 판례 및 법제처 행정해석례에 따르면, 법해석의 기본 원칙은 문언해석이 원칙임. 다만, 행정실무상 문제가 있다는 근거로 갑설로 해석하여 시도해볼 수는 있을 것이나, 추후 을설로 해석되지 아니하도록 조례의 문언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을설) 법해석은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여야 함. 법 제28조의 조문 내용 중에는 제1항 이외의 다른 조항에서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명확한 문언의
		사무(교육지원청 업무)라는 의견	□ (갑설) 사립학교법 제28조의 제목이 재산의 관리 및 보호이고, 제1항이 '학교법인이 그 기본 재산에 대하여 매도·증여·교환,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20	관련 법률 자문	 □ 민원인의 신상정보 없는 민원 내용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교장이 국민신문고 민원 내용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을 경우 교장의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제59조 위반인지 여부 	
			□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민원인의 신상정보 없는 민원 내용이 민원인의 개인정보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됨 □ 교장이 민원 내용을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개인 정보보호법 제59조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며, 구체적으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민원 내용)를 제3자에게 누설한 것으로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사료됨.
21	개 인 과 외 교 습 자 보조강사 채용 사무처리 관련		□ 2015년과 2020년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기본법 발효되기 전의 행위이므로 행정제재가 어렵다고 생각됨
22	변경인가 관련	□ 설립자 변경인가시 기 인가받은 지하 조리실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립·운영규정」제3조 제3항에 따라 교사 기준면적을 완화할 수 있는지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 정원 산출시 다른 기준으로 기존 정원의 변경이 없다면 학급당 원아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 아파트단지 내 놀이터 시설을 유치원 체육장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 (불가) 설립자 변경시는 현재 시행되는 정원기준을
			 □ (불가) 인천광역시 지침에 지하실을 유치원의 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 □ (불가)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 현 시점에서 재량으로 교사 기준면적 완화는 어려움. □ (불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라 설립자 변경시 현재 시행되는 정원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불가) 아파트단지 내 놀이터는 학교의 체육장이나 공공체육시설 혹은 그에 준하는 시설로 보기 어려움.
			 □ (불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지침인「사립유치원 인가 업무 처리지침」을 따라야 함. □ (불가) 인천광역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교육청 재량으로 인가할 수는 없음. □ (가능) 유치원의 '설립인가'와 '변경인가'는 명확히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원아수 기준은 적용대상이 아님. □ (불가) 아파트단지 내 놀이터는 학교의 체육장이나 공공체육시설 혹은 그에 준하는 시설로 보기 어려움.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 (불가) 교육부 지침에 따라 설립자 변경인가 시 현행시설기준을 적용하여야 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 인가지침은 지하에 유치원 시설을 둘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불가) 조례 없이 교육청의 재량으로 교사 기준면적의 완화는 어려움. □ (불가) 현행 법령상 기준을 적용하여 원아수 기준을 의무적용할 필요가 있음. □ (중립) 유치원과 놀이터의 인접한 정도, 공동사용이 용이한지 여부, 교육상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 (불가) 인천광역시 교육청 「사립유치원 인가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 지하실은 유치원 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 □ (불가) 조례 제정 없이 교육청 재량으로 완화하여 인기할 수 없음. □ (불가)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에 따라 설립자 변경시 현행 정원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 (불가) 아파트단지 내 놀이터 시설을 공공체육시설로 볼 수는 없음.
			 □ (가능) 조리실을 지상으로 이전시 교실의 면적이 줄어들어 '교육 여건 개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며, 지층에서 옥외 지상으로 바로 나올 수 있는 선큰과 대피동선이 다수 설치되어 있음.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 (불가) 조례 제정 없이 부족한 교사면적을 교육청 재량으로 완화하여 인가하는 경우는 문제 가능성이 존재함. □ (불가) 교육부 지침은 설립자 변경시 현행 기준을 적용하라고 특별히 정하고 있음. □ (가능) 유치원과 놀이터 시설이 인접하여 공동사용이 용이하고 유치원 여건상 체육장 확보가 곤란함이 명확하다면 가능함.
			 □ (가능) 법령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치원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 고만할 뿐,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침처럼 지하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음. □ (불가) 조례를 마련하여 두고 있지 않다면 교사 기준면적 완화는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가능) 기존 정원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아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됨. □ (가능) 다른 사례에서 아파트 놀이터 시설물을 원생들이함께 사용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인가가 이루어진 것을 고려할 때 가능할 것으로 보임.
23	마을 방과 후학교 사무처리 관련 법률 자문 요청		'위조'를 의미하는지 허위작성을 의미하는지 등을 파악하여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않은 경우 신고 주체 확인 □ 운영기관이 미지급 강사료 전액 지급 및 정산 서류 정정 제출 시 교육청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 사항 □ 운영기관이 강사료 지급 및 정산서류 정정 불이행, 무응답 시 교육청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 사항 □ 추후 공모사업 진행 시 위와 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적 준비 사항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나, 일반적으로 방과후학교 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달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임.
			□ 보조금 받은 기관이 정산서류를 조작,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의거, 형사처벌 가능하며 교육청은 경찰에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해당 기관의 장을 형사고소 할 수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교육청이 피해자이므로 형사고소의 주체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강사료를 받지 못한 강사들은 노동청에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해당 기관의 장을 고발하면 될 것으로 보임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 해당 기관에서 강사료를 전액 지급한 경우(반의사불벌죄) 노동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조작된 서류를 정정 제출하더라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는 없어지지 않으므로 형사고소 진행가능함. 형사고소가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추후 감사에서 문제가될 소지가 있어 보임. □ 강사료 미지급 시 강사들이 노동청에 고발 진행하고, 조작된 정산서류를 올바르게 제출하지 않는 경우 교육청은 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고소, 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를 근거로 해당 운영기관에 내린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③ 추후 공모사업에 공모를 제한하는 방법 강구 □ 추후 공모사업 진행 시, 이 사안과 같은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모 글에 위 내용을 기재하거나 업무협약서에 위 내용을 추가하는 방법 제안
24	공사계약대금 미 지급 관련	정산 문제로 준공금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교육청이 변제공탁을 통해 준공대금 지급 가능 여부 문의	□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준공대금의 변제공탁 진행 가능
			□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 준공대금의 변제공탁 진행 가능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25		공사준공대금 변제 □ 변제공탁을 통해 준공대금 청산 시 변제공탁 □	□ 공사준공대금 전액에 대한 변제공탁 진행 가능
	공탁 관련	금액 산정에 대한 질의	□ 공사준공대금 전부로 변제공탁 진행하는 것이 타당
			□ 공사준공대금 전부로 변제공탁 진행하는 것이 타당
			□ 공사준공대금 전부로 변제공탁 진행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됨
26	학원 허위과대광고 사무처리와 관련한 법률 자문		□ 문제가 되는 문구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학원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소정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허위·과대 광고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움
			 □ 반영구화장 관련 교습내용을 교육지원청에 등록하였고, 이를 기초로 교습과목에 대하여 홍보한 이상 거짓 또는 과장표시 내지 사실을 부풀려 표시하는 광고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허위·과대 광고에 해당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음 □ 광고의 실제 수요자인 학원수강생, 입시생, 실습생들이 미용학원을 선택함에 있어서 통상 기울일 것으로 보이는 주의의 정도 등 여러사정을 감안하여 판단하면 ○○ 대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학원인 것처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거짓·과장'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 필요, 행정처분은 신중한 결정 필요 수강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해당 수강생들은 관련 대학과 학과에 대해서 일반인들보다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므로, 위 광고를 보고 해당 학원에 등록 여부를 고려하면서 '○○대 메이크업학과'만을 대비하는 것으로 과대광고로 오인하거나 거짓 광고로 혼동할 것으로 보이지 않음
27	사립유치원 인가 업무 사무처리 관련		
			□ 의도적으로 인가신청 기한 내 인가신청을 하지 않는 점등이 추단되는 만큼 설립계획 승인에 대하여 취소할수 있다고 보임.
			□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에 비추어 해당 유치원 설립이 불가능하다고 교육감이 판단하면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사료됨.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28	공사계약(채권압류) 사무처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도달 이후, 작성된 변경 계약서의 노무비 압류금지 가능 여부	□ 대법원 2005.6.24. 선고 2005다10173 판결 관련 압류 금지 불가
			□ 대법원 2005.6.24. 선고 2005다10173 판결 관련 압류 금지 및 노무비 집행 불가
			□ 대법원 2005.6.24. 선고 2005다10173 판결 관련 압류 금지 불가
29	아동학대특례법 및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한 법률 자문	내용을 아동학대 불처분 결정 이후에 부모에게	차후 아동학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 정보 비공개 근거: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에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등은 그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범죄의 예방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함. 위 관련 법령을 이 사안에 적용하여 보면, 위클래스 상담교사는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에 관여하는 보조인에 해당하고, 상담일지에 적힌 내용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내용에 해당할 것임. 이사건 상담일지를 공개할 경우, 새로운 아동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범죄의 예방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상담교사의 피해아동 보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임.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비공개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30	아동학대특례법 및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한 법률 자문	□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 정황이 포함된 상담일지 내용을 아동학대 불처분 결정 이후에 부모에게 공개가능 여부 및 관련 법령 등의 근거	1 -

연번	구 분	<u>!</u>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 민원인 주장과 같이 특정 기간의 상담일지 내용이 아동학대와 무관하다고 학교가 인정할 경우, 해당 기간 상당일지에 대한 정보공개 가능 여부 □ 정보공개가 가능할 경우: 학교가 정보공개에 앞서 민원인으로부터 불처분 결정 등과 관련하여 추가로 확인할 사항 및 공개가능한 내용의 범위 	있으며 그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1항 적용 예외라고 판단할 여지가 있음. □ 아동학대처벌법에서 이루어지는 불처벌 결정은 ①
31	행정소송 상고 자문 요청		전기공급계약(협약)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 전기공급계약과 공유재산 사용 허가는 구별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됨. □ 원고와 피고간의 전기공급계약 체결을 공유재산 사용 허가로 의제할 수 없으며, 행정처분을 계약의 형식으로 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임. □ 상고심 승소 가능성은 예상하기 어려우나, 1심과 2심의 법률 해석이 다르고 1심법원의 판단(피고 승소)이 행정 처분의 성질과 현행법에 충실한 법률해석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법률심인 상고심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 원고와 피고측간 체결한 전기공급계약(협약)은 공유 재산법상 절차에 따른 행정처분인 공유재산 허가로보기는 어려움. □ 원고와 피고측간의 전기공급계약(협약) 체결을 사용허가로 해석할 경우, ○○○○공사는 언제나 공유재산법에따른 절차 없이 행정재산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게되어 공유재산에 관한 제도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를초래할 수 있음. □ 상고 시 승소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32	학교 정수기 수질검사 용역 지원 사업 관련		내용을 제대로 이행한 것인지 여부는 전문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현 상황으로 불이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1분기 수질검사 결과가 제대로 이행한 것인지 전문적·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현 상황만으로 계약 불이행을 단정하기 어려우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지시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 용역업체의 채수 또는 관리 과정에서 어떠한 과실이 있었는지 입증이 되어야 함.(용역업체 과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 과업수행 불가능 사유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므로 엄격하게 해석. 용역업체의 전문성, 채수 과정에서의 과실여부, 관리·감독 능력 등 여러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야 함. □ 2분기 결과, 1분기와 유사 상황 발생 및 발주처의 과업지시 불이행 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 용역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의 점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함. 입증책임은 발주처에게 있으며, 증거가 충분한지 검토 필요(부적합률이 높게 나타난 기술적인이유 등 보완 필요) □ 계약해지는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의해당여부가 문제로 해당과업은 학교 먹는물 수질검사 및 분석을 통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 먹는 물 공급으로학생·교직원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으로수질검사·분석은 해당과업의 핵심. 이에 부적합률이매우 높게 나타나 용역업체 신뢰가 어렵고, 학교 업무에지장을 초래하고 비용이 지출되어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되어 계약해지 대상이 될것으로 사료됨.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 위와 같은 사유로 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부정당업체 지정의 경우 법령상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실시함이 좋으나 해당건의 경우 업체의 부실· 조잡, 부당·부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임.
			 □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용역업체의 채수 과정 상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계약해지 요청을 위해서는 용역업체의 과실을 입증하거나, 용역업체가 과실을 인정해야 하나,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과업지시서 상 내용을 불이행 한다해도 계약상 즉시 해제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즉시 해제 어려움, 1분기와 동일 상황이 발생하여도 즉시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체 지정 어려움. 수질이 진짜 좋지 않아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용역업체의 과실을 명백히 입증하여야 함.
33	사립유치원 설립자 변경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립·운영규정」제5조 (체육장)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유치원과 동일 건물 내에 위치한 교회의 2층 실외 테라스, 예배실을 공공체육시설 등으로 보고 체육장 기준면적을 완화할 수 있는가?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유치원과 동일 건물 내에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립·운영규정」제5조 (체육장)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유치원과 연접한 종합사회 복지관을 공공체육시설 등으로 보고 체육장 기준면적을 완화할 수 있는가?	위한 공간이라보다는 휴식, 예배를 위한 공간이므로,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 교회의 2층 실외 테라스나 예배실은 공공체육시설로 볼 수 없고, 종합사회복지관 역시 비록 복지관 건물이 유치원과 물리적으로 연접해 맞닿아 있다 하더라도 공공체육시설 또는 그에 준하는 시설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시설들을 공공체육시설 등으로 보아 체육장 기준 면적을 완화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 종합사회복지관 내부에 체육관, 중강당, 소강당 등 체육활동이 가능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므로 이를 체육시설로 볼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유치원이위치한 같은 교회와 동일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해당시설 이용이 추후 제한될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므로 유치원 설립자 변경시체육장 기준면적을 완화하여 인가가 가능하다고 보여짐.
			□ 교회의 '2층에 있는' '실외 테라스'와 '예배실'은 공공 체육시설 또는 그에 준하는 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따라서 해당 시설을 공공체육시설 등으로 보고 체육장의 기준면적을 완화하는 것은 어렵다고 사료됨. □ 유치원과 연접한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설립·운영규정」제5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공체육시설 등'에 해당할 수 있어 보임. 유치원의 교육상 지장이 없다는 사실(이동거리, 시간,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안전성 등)이 인정된다면, 이 사안의 해당 유치원 설립자 변경을 검토할 때 체육장 기준면적을 완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다만, 체육장 기준면적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보이므로, 추후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임. 이 사안의 경우 완화의 정도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34	• — —			평생직업교육학원이라면 학원과 평생교육시설의 중복 가능
	교육법의 중복 관련			평생교육시설이 신고된 주소와 같은 위치에 학원을 중복 등록하는 경우 평생교육시설의 목적으로 제공 되었다고 할 것임. 또한, 학원이 이미 등록된 주소와 같은 위치에 평생교육시설이 신고를 하는 경우 학교 교과교습학원이 등록된 시설을 평생교육시설로 인정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학원법 제2조 제1호 라목」 및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 나목」은 중복 등록을 거부하기 위한 직접 근거가 될 수 없음. 소관 부서인 교육부의 해석이나 입법적 보완 필요함.
				평생교육시설이 신고된 주소와 같은 위치에 학원의 등록 사유만으로는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으나, 각 법령의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 재량권을 발휘하여 심사함이 타당함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정보공개법 및 학원법 법률해석 및 공개 가능 여부 자문	비개인정보/개인정보사항), 설립일자, 처분정보	□ 등록말소된 학원 정보도 공표된 정보이므로 공개 가능하나, 설립일자 및 처분정보는 불가
			□ 등록말소된 학원의 비개인정보는 판단불가, 그 중 개인 정보사항(개인성명 등)은 불가능 그 외 사항은 공개 가능, 설립일자 및 처분정보사항은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보여짐(참고)
			□ 등록말소된 학원 공표된 정보 중 비개인정보는 공개가능, 그 중 개인정보사항은 불가, 설립일자 및 처분정보 불가
36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관련	소의 □ "인천광역시 국제교육기관 초등센터 학원"의 명칭이 사용 가능한가?	 □ 학원법 상 고유명칭의 다음에 학원이나 교습소를 붙인다면 거부할 근거는 없음 □ 학원의 명칭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으로 혼동되어 보이는 사정이 있어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취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행위로써 판단해야 함
			□ "인천광역시" "국제교육기관" 사용만으로는 학원법 등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으로 혼동되는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도 할 수 없음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할 것을 권고함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37		조교로서의 경력을 포함하는 것도 교원의 통상적인	
			 구교육법 제79조의 교원의 종별과 '자격'에 사립대학조교는 교원으로 포함되지 않고, 동법 [별표 1]의 교육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가 아님. 사립학교법 제54조 제1항에 의거하여 교원을 임용한경우 관할청에 보고해야 하나 △△대학교의 증명서에따르면 관할청에 교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음. 구교육법에 따라 조교는 교원의 범위에는 해당함. 문언및 체계적 해석에 따라 대학의 조교는 교원의 범위에포함되어 있으나, 고등교육법으로 바뀌면서 직무 성격상학생 교육의 관여도가 낮아 제외됨.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 그러나 해당 교사는 구교육법상 교원에 해당하지 않음. 구교육법상 교원의 범위에 포함된 조교는 '학술에 관한 사무를 보좌'하는 조교를 의미하고, 일반행정 업무를 담당한 행정조교는 포함되지 않으며, 근무지가 대학 부설연구소인지, 대학교인지에 따라 변동이 없음
			□ 교사 ○○○이 근무한 국제관계연구소는 대학부설 연구소이며 교육부에 교원으로 임용 보고되지 않은 점, 행정 업무를 담당한 조교임을 비추어 볼 때 행정조교 근무 경력을 원아와 학생을 직접 지도, 교육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거나 학술에 관한 사무를 보좌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구교육법상 조교는 대학교원자격기준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교원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며 교육법 제73조의 교원의 개념과는 별도로 '학술에 관한 사무를 보좌하는' 것에 불과한 조교를 교원의 종별에 하나로 명시되어 있음.
			□ 사립학교법에 따른 임면 보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대의 문제이지 해당 교사가 당시 법령에 의한 교원에 해당한다는 점에 영향을 줄 수 없음.
			□ 「고등교육법」이나 현행「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면 행정조교 경력을 교원으로서의 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을 것이나, 해당 교사의 초임 획정 당시의 법령에 따르면 조교 경력을 교원으로서의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38	공개입찰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민원 사항 회신서 검토		 □ 민원을 제안한 사업은 사전규격 공개를 통해 이의제기를 받은 바 있으며, 사전규격 공개 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안건을 가지고 입찰공고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음. □ 민원이 제기된 기간은 조달청 입찰공고를 통해서 제안서,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기간이므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다른 업체에도 동일하게 공고된 사항임. 현 시점에서 입찰공고를 취소하는 것은 이미 입찰에 참가한 업체와 사이 불필요한 법률 분쟁을 유발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입찰규격 변경은 불가함.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에 발생한 민원사항이므로 즉각적인 답변이 필요함.
39	2단계 입찰 조달청 의뢰 계약 사무 처리와 관련한 법률 자문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률에 의하여 제안서	관련 법령에 의하면 입찰무효 사유를 정하고 있으나, 본 사안은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가격개찰 및 낙찰자 선정 전에 3일간 개별업체에 공개하지 않은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 본 사안의 평가 결과 공개는 이 사건의 본질적 부분이라 볼 수 없으며, 설령 절차상 하자라고 보더라도 사후에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이의신청 절차도 진행하였으므로,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함.
			 □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행정행위 등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 그 절차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나, 이 사안의 제안서 평가 결과 공개는 법령에 규정된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처리 지침상 절차를 과실에 의하여 지키지 못한 것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음. □ 나아가 귀교에서는 사후 제안서 평가 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를 보완한 것으로 보여 평가 결과 미공개가 낙찰자 선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더라도 그 계약에 취소 또는 무효 사유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이 사건의 지침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지침상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로 입찰 무효 처리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 더군다나 추후 해당 절차를 보완하였으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40	○○○○중 협약서 이행 관련	\ \ \ \ \ \ \ \ \ \ \ \ \ \ \ \ \ \ \	
			요구는 할 수 없는 사안으로 생각되며, 법률관계는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손해를 본 사람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그 상대방에게 책임을 따지는 것이 기본적인 구조인데, 이 사안은 학교 측의 사정에 기인한 것이므로 조합 측에게 현금납부에 대한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는 사안임.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금납부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학교와 조합이 현금금액을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기준이 되는 금액은 공사에 착수한다면 공사비가 기준이 되겠지만, 학교에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강제할 수는 없어서 현상에 의하여 금액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임.
41	부당이득반환청구	□ 학교에서 B에게 착오송금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가능 여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외 다른 방법이 있는지	 □ 학교는 교육시설의 명칭으로서 일반적으로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있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음. □ 소송 외 다른 방법은 없으며 인천교육감이 B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해야될 것으로 보임.
42	계약제교원 임금 반환 청구 관련	□ 계약제교원의 성과상여금 지급시 급여 미반환금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 성과상여금의 전액이 아닌 성과상여금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상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근로자에게 성과상여금에서 급여 미반환금을 상계 처리함을 사전 통보한 후에 급여 미반환금을 상계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3	협력교사 채용 불합격 처분 취소 행정심판 건	□ 내부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했으나 공고문에 없는 절차로 협력교사를 채용한 경우 채용절차법 위배 되는지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 협력교사는 위촉직인데 채용절차법에 적용받는지□ 채용절차법에 위배된다면 이미 합격된 협력교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 채용절차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용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큼. □ 위촉된 협력교사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이 없으므로 협력교사 활동을 진행해도 될 것임.
44	학교급식식재료 (공산품) 낙찰자 선정 관련	□ 학교급식식재료(공산품) 납품업체 선정 입찰자격 조건에 오류가 있으나, 공고문 내용 우선으로 판단하여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한 1순위를 제외하고, 2순위를 낙찰시켜도 되는지 여부	평등 및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상대방의 관계에서 입찰공고
45	학교 계약사무처리와 관련한 법률 자문		나중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차제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양 당사자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임.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46	학교 내의 흡연실 설치가 적법한지에 대해 법령(국민건강 증진법 제9조 4항) 해석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야기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내에 적법한 절차에	단서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갖추었으면 학교 내에도 흡연실 설치는 가능하다고 해석됨. 따라서 학교 내 일정한 조건을 갖춘다면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 설치는 가능하다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됨.